

#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3,533,467	10,006,004
일반회계	329,568,889	9,887,067
특별회계	3,964,578	118,937
기타특별회계	3,964,578	118,937
주택사업	696,230	20,887
의료급여기금운영	723,807	21,71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32,070	3,962
공영개발사업	419,086	12,573
장기미집행	800,372	24,011
농공지구조성사업	529,069	15,872
기반시설	119,146	3,574
수질개선	544,798	16,34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59,40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 처리한다.